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316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중, 전진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치동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구 달서구 T}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5.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가 C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수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차전2227)은 'C는 원고에게 21,888,486원 및 위 돈 중 14,526,604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0.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G이 C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수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관할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16606)은 'C는 원고에게 7,449,847원 및 위 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0.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H이 C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수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소331123)은 2020. 12. 16. 'C는 원고에게 2,131,299원 및 그중 1,418,950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H이 C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수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909264)은 2020. 3. 20. 'C는 원고에게 6,603,233원 및 그중 5,404,487원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는 I이 C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수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331369)은 2021. 1. 13. 'C는 원고에게 16,249,772원 및 그중

11,852,900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원고는 J이 C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아 그 양수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7615)은 2021. 4. 28. ‘C는 원고에게 1,139,086원 및 그중 740,993원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위 1) 내지 6)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의 2023. 1. 26. 기준 원리금 합계는 82,587,065원(= 33,553,279원 + 11,552,654원 + 3,019,521원 + 11,000,165원 + 21,975,046 + 1,486,400원)이다.

나. 망 K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 1) 망 K(1997. 9. 30. 사망)의 상속인은 배우자 L, 자녀들로 M, 망 N, C, O, P가 있다.
- 2) 망 K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망 K의 상속인들은 2022. 5.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망 N이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망 N은 2022.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9.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는 망 N의 배우자인데, 망 N의 사망 이후 2022.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 1) C는 적극재산으로 경북 칠곡군 Q 공장요지 및 그 지상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은 2021. 1. 2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 2) C는 2022.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R은행, S카드, T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3 지분을 망 N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3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분할협의를 망 K 사망일인 1997. 9. 30. 무렵 이루어졌고, 다만 그 등기만을 미루는 사이 망 N의 건강이 악화되어 2022. 5. 23. 망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망 N 및 피고는 망 C의 자산상태를 알지 못하였는바,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3.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859 판결 참조).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분할협의 시기

1) 이 사건 분할협의의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망 N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9.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9. 2. 망 N이 사망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갑 제25,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N은 망 K의 다른 상속인들인 L, M, C, O, P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망 N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022. 5. 20.자로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N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의 나.항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분할협의일자와 달리 망 K의 사망일이 등기원인일자로 기재된 점, ③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 명의 정리를 위해 뒤늦게 작성되었을 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인 2022. 5. 20.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인 2022. 5. 20.경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상속하는 내용인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중 C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의 결과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족 결과의 발생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2/13의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2,443,7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채권액이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법률행위는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2/13 지분 전부이다.

라. 피고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C가 N,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1)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는 전득자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2/13 지분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현

별지